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표시·광고의 실증자료 사전확보 등〉

■ 유명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59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표시·광고 실증자료 사전확보 의무 부과 등	2
2.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등 법령 정비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명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5.
3.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위원회가 2022. 9. 공정거래위원회에 현행법상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거짓·과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Ⅲ. 검토의견

1. 표시·광고 실증자료 사전확보 의무 부과 등

□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표시·광고행위를 하기 전에 실증 관련 자료(이하 “실증자료”라 한다)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 또한 사업자등이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들은 <u>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u>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u>다음 각 호의 행위</u> 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 <u>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소비자를</u> ----- ----- --- <u>있고</u> ,----- ----- <u>표시·광고 행위</u> ----- ----- -----.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생략)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들에게 <u>관련 자료</u>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그 제출기간을 연장</u>할 수 있다. <신설>	②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u>표시·광고행위를 하기 전에 실증 관련 자료(이하 “실증자료”라 한다)</u>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 ----- ----- ----- ----- -----<u>실증자료</u>----- -----. ④ 제3항----- ----- ----- ----- ----- ----- ----- -----<u>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로 연장</u>----- -----. ⑤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1

현행	개정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생략)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항을 위반한 표시·광고행위로 추정한다. ⑥ ----- ----- ----- -----제4항----- ----- ----- ----- ----- ----- ----- ----- ----- -----. ⑦ ----- 제3항----- -----제4항----- ----- ----- ----- ----- ----- -----.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 7. (생략) ③ ~ ⑤ (생략)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4항----- ----- 3. 제5조제7항----- ----- --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표시·광고의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법 제5조제5항 및 제20조제2항).

□ 2016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들로부터 표시·광고에 따른 안전성 관련 실험자료를 조사 시 제출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¹⁾되었음.

□ 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증자료의 생산 시기를 정하고, 미실증 책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을 권고²⁾하였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³⁾에 따르면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우선 개정안에 따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여 제출받을 수 있는 실증자료의 범위가 현행보다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1)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처리과정에서 표시·광고의 실증 운영고시 규정에 따른 제대로 된 안전성 관련 실험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음.”(출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31p.)

2)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들이 허위·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실증자료의 생산시기를 규정해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 미실증 책임에 대한 규제규정을 도입하기 바랍니다.”(출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11p.)

3)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능성이 있음.

○ 즉, 개정안 제5조제2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표시·광고행위를 하기 전에 실증 관련 자료(이하 “실증자료”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실증자료의 생산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 제3항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개정안 제5조제5항은 사업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⁴⁾에는 제3조제1항⁵⁾을 위반한 표시·광고 행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

4) 개정안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표시·광고행위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규정이고, 사업자의 실증자료 제출의무는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생략)”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려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현행법은 제20조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에 대해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전에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추정되고, 그 사업자등에게는 시정조치(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과징금(제9조), 벌칙(제17조)의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실증자료의 확보의무와 실증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⁶⁾를 고려하여 거짓의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구성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2.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법 준용규정 등 법령 정비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안 제7조의5), 손해배상책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1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준용(안 제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안 제16조의3 신설), 벌칙(안 제18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u>상당한 기한 내에</u>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u>1일당 200만원</u>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 ----- <u>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u> ----- ----- ----- ----- <u>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② (생략) <u><신설></u>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서 제1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u>

현행	개정안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 ----- -----공무원,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를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 제16조의2----- ----- ----- ----- ----- ----- ----- ----- ----- -----.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 ----- -----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

현행	개정안
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u>이의신청</u>,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 ----- -----<u>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u>, ----- ----- ----- -----<u>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③ ----- ----- ----- ----- ----- ----- -----<u>제107조까지를</u>----- ----- ----- -----.
<신설>	<u>제16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u>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른 동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신설>	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 비밀엄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법 준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기록송부제도를 자료제출의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⁷⁾과 이의 개정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¹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¹¹⁾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5

7) 유명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47호)

8) 유명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52호)

9) 유명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53호)

10) 유명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54호)

11) 유명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55호)